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와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부 대표자협의회 결과보고서

기밀

몰로토프(Молотов) 동지 수신
안토노프(Антонов) 동지 수신
메레쯔코프(Мерецков) 동지 수신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4조 3항에 따라 소집된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와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부 대표자협의회 결과보고서

I. 조직 문제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에서 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은 1946년 1월 15일 서울에 도착했고, 2월 7일 서울을 떠났습니다.

소련군사령부에서는 협의회에 다음의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1) 소장 슈티코프 테렌티 포미치(Штыков Терентий Фомич)
- 2) 소장 샨인 그리고리 이바노비치(Шанин Григорий Иванович)
- 3) 소장 로마넨코 안드레이 알렉세예비치(Романенко Андрей Алексеевич)
- 4) 특명전권공사 짜랍킨 세몬 콘스탄티노비치(Царапкин Семен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 5) 공사 발라사노프 게라심 마르티노비치(Баласанов Герасим Мартынович)
- 6) 공병대좌 부투스وف 빅토르 파블로비치(Бутусов Виктор Павлович)
- 7) 고문 마누캄 아우익 아벤티치(Манукян Аюик Аветич)
- 8) 고문 라브로프 바실리 바실리예비치(Лавров Василий Васильевич)
- 9) 중좌 코르쿨렌코 티혼 이바노비치(Коркуленко Тихон Иванович)
- 10) 중좌 자하로프 그리고리 알렉산드로비치(Захаров Григо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 11) 비서 마슬로프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Маслов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미군사령부에서는 다음의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1) 소장 아놀드(A. Arnold)
- 2) 소장 스팔딩(Sidney P. Spalding)
- 3) 정치고문 베닝호프(H.M. Benninghoff)
- 4) 대령 부드(R.H. Booth)
- 5) 대령 브리튼(Frank H. Britton)
- 6) 대령 언더우드(J.C. Underwood)

- 7) 대령 헐리히(W.J. Herlihy)
- 8) 중령 코넬슨(A.J. Cornelson)
- 9) 중령 엔더스(G.B. Enders)
- 10) 소령 에만스(Эманс)

1월 16일의 협의회 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자 총회는 13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한다. 분과위원회는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한다. 상장 슈티코프와 소장 아놀드가 번갈아 협의회를 주재한다.

제1차 회의에서 의정서와 제 결정의 작성규정 및 이것의 발효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월 18일에 의제 결정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의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경제문제 - 소장 샤닌과 대령 언더우드

교통문제 - 소장 로마넨코와 중령 코넬슨

행정문제 - 고문 발라사노프와 대령 헐리히

필수적인 기술요원들이 분과위원회 성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II. 의제 및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4조 3항에 규정된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 대표자협회의 과업에 대한 이해

1.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은 붉은 군대 총참모장의 지시에 의거하여 협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4가지 안건을 제기하였습니다.
 - a)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의 전기 공급 조건에 대하여
 - b)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의 식량(쌀), 경공업 원료, 섬유, 가죽제품, 공업설비 부품 공급에 대하여
 - c) 조선의 양 지역 간 철도, 자동차 및 우마차 통행에 대하여
 - d) 북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일본인 난민 송환에 대하여
 이 모든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었습니다.
2. 미군사령부 대표자들은 19개 안건을 논의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첨부 문건 No.1. 논의 결과 15개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첨부 문건 No.2.
3. 미국인들이 제기한 의제에는 붉은 군대 총참모장 지시 No.146084/III와 지시문 첨부 문건에서 예견하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 군사책임지역 간 관제초소에 대하여
 - 라디오 주파수의 배분에 대하여
 우리는 이 안건들을 논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건들의 해결이 양사령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총참모장 지시를 통해 검토하라고 제시된 일부 안건들을 논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즉

- 양 지역 간 우편물 교환에 대하여
- 조선인들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하여
이 안건들의 의제 채택과 우리의 요청에 따른 이 안건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귀하가 이미 승인하였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4. 3개의 안건그룹이 의제에 포함되었습니다.

- 제1그룹 - 동 협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11개 안건. 그 가운데 2개(‘북조선과 남조선 항구들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와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 난민들의 송환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논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제2그룹 - 추후 검토를 위해 3개 안건(‘조선 전역에 단일화폐체계를 수립하는데 대하여’, ‘남북조선 간 전화 및 전보통신 수립에 대하여’, ‘교역기관 사무소들 간의 정기적 연락 체결에 대하여’)을 채택하였습니다.
- 제3그룹 - 2개의 특별 안건 : ‘만주에서 북조선 지역을 거쳐 남조선으로 역청탄과 농산물을 수송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유예되었습니다. ‘38도선을 따른 2개 지역 간의 분계선 조정에 대하여’는 소련군사령부의 검토 및 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5. 1월 16일 첫 번째 협의회 회의에서 의제를 논의하는 중에 미군사령부 대표인 아놀드 소장이 동 협의회 임무와 권한에 대한 미국 측의 관점을 진술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통합경제를 기반으로 장래의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동 협의회에서 조선의 경제통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제안한 의제 제3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북조선과 남조선 간의 자유로운 왕래에 대한 모든 제한을 제거하고 단일의 행정경제단위로서의 조선을 정상적으로 운영”.

“전 조선을 통합한다는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협의회 목표이다. 협의회는 소련군 및 미군사령부 관할 행정경제지역 간 활동의 진정한 통합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한 활동들은 모스크바 성명에서 적시한 조선을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에 부합해야 한다.” - 1월 16일 회의 중 아놀드 장군의 발언에서.

사적인 대답에서 아놀드 장군은 이 관점을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이행을 3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 - 조선임시정부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동 협의회에서 조선의 경제통합에 대하여 결정

두 번째 단계 - 모스크바 성명 1조 및 2조에 규정된 임시정부의 수립

세 번째 단계 - 영구적인 조선정부의 수립.”

미국인들은 모스크바 성명 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동 협의회가 다음과 같은 안건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a) 일제 치하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지도부를 두는 조선의 경제통합. 따라서 그들이 제기한 공동위원회 의제에는 교통의 통합 및 서울에 중앙지도부의 설립, 조선은행이 주도하는 단일화폐체계의 수립, 서울에 위치한 해당 중앙기관에서 전기 공

급 및 배분 문제 담당, 단일통신·우편·라디오방송 체계의 수립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조선인들이 이 모든 행정기구와 기업소들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선동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b) 동 협의회에서의 노력을 통해 행정경제생활에서 나타나는 조선의 분단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선을 통합시켜야 한다. 조선의 행정적, 경제적 통합은 조선임시정부의 수립을 규정한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 성명 4조 3항을 이행하기 위한 예비단계가 될 것이다.

c) 자유롭게 발전하는 민간교역의 확장과 양 지역 간의 자유로운 이동 허용.

4조에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문이 있기 때문에, 즉 “동 협의회는 행정경제지역의 상시적인 통합을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4조를 그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영구적인 통합을 조선을 통일시키고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중앙기관들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38도선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철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d) 미국인들은 장래의 통합을 위해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모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전문가들이 조선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통신집단들의 교환을 조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아놀드 장군은 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6.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은 붉은 군대 총참모장 안토노프(Антонов) 동지의 1946년 1월 7일자 지시 No.146084/III에 의거하여, 즉 “- 북조선의 소련군사령부와 남조선의 미군사령부 사이에 발생한 남북조선에 연관된 시급한 행정경제사안들을 해결하라. -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경제사안들의 향후 통합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거하여 협의회 임무를 결정하였습니다.

7. 의제를 논의하는 중에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은 미국인들이 제기한 조선의 경제통합과 행정지도의 서울 집중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제안을 논의한 결과 미국인들은 그들이 최초 시안에서 제기했던 7개 안건을 논의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7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8도선을 따라서 설치된 모든 요새를 철거한다.

- 통제소 체계를 기반으로 a) 상업에 종사하면서 영구거주를 위해 귀가하는 자들, 특별한 지시에 따라 국가사업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 b) 생산재와 소비재, c) 모든 유형의 운송 등을 위해 미국의 군사책임지역과 소련의 군사책임지역 간 통행을 허용한다.

- 상업과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생산재와 소비재의 정상적인 왕래를 재개한다.

- 신문을 조선 전역에 배포하도록 허용한다.

- 기간상품의 조선 밖 반출을 금지한다.

- 무제한적 이동이 허용된 통신집단을 교환한다.

- 이해당사국 대표자들에게 조선에 있는 자국 소유 혹은 자국민 소유 부동산 및 동산을 조사하도록 허용한다.

Ⅲ. 협의회 과정 및 협의회 과정에서의 의제 안건 결정

1. 미국인들은 경제통합과 지도의 집중화 논의에 대한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의 단호한 거부를 염두에 두면서 경제통합의 기본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분과위원회 회의들과 통합회의에서 새로운 경제 분야 지도의 중앙집중화 안건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운수, 에너지체계 및 다른 경제 분야의 지도를 위해 미국과 소련 책임자가 동수로 구성된 통합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위원회 역시 서울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별 사안들의 논의절차에 대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후에 미국인들은 이 안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통 문제 지도를 위한 제안을 조정 및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미소교통기술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교역위원회의 설립도 예정되었습니다.

2. 양 지역 간 교역문제 논의 및 북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으로의 전기 공급 조건에 대하여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의 제안 :
 - a) 양 지역 간 교역은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의 상호납입 형태로 조직한다.
 - b) 북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으로 그리고 그 반대 경우의 교역은 가능한 한 동일한 액수로 시행한다. 납입액 간의 차이는 납입 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c) 1946년도 식량, 상품, 전기 등의 모든 계산은 조선 주재 일본 총독이 결정했던 1945년 8월 1일자 불변가격으로 한다.
 - d) 미군사령부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6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전기의 총액을 지급하고, 식량, 전기설비 및 조선의 북쪽 지역 발전소용 자재를 납입할 의무를 진다.
 - e) 남쪽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공급하는 총액 중 2/3는 식량(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미군사령부 대표자들은 교역 문제의 논의를 위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기하였습니다.
 - “1. 삼상회의 참가자들은 양 지역 간 행정경제문제에 대한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는 제 방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모스크바삼상회의 성명 4조를 삼상회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양 지역 간 전 기간에 걸친 정상적인 교역의 재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라는 지시로 해석해야 한다.
 2. 행정경제문제들에서의 일상적 조정에 도달하기 위해 안정된 은행체계, 운송체계, 공공설비체계 등을 포함하여 그와 같은 조건에서 교역의 흐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조정을 위한 기존 기관들을 (가능한 한) 전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양 지역 간 정상적 교역을 재개할 경우 조선 인민들이 상품과 설비뿐 아니라 실무종사자 측면에서도 자기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선인 종사자들을 전면적으

로 활용해야 한다.

4. 조선의 모든 지역에서의 교역 재개는 조선 인민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이 과정이 나라 한 쪽 조선인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나라 다른 쪽 조선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의되어야 한다.
5. 조선의 교역 재개에서 점령군의 역할이나 기능은 도움을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가비용 및 인력이 소요되고 조선과 조선 경제가 자립하는 시간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점령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높은 조직적 통제기관을 조선의 경제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요구들의 본질은 양 지역 간의 자유로운 사적 교역을 허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련군사령부 대표들은 현 시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인들은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의 상호납입 형태로 교역을 조직하자는 소련 대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인들은 교역을 위한 원래가격(original price)과 관련하여 모든 상품의 가격으로 1945년 12월 1일 기준 시장가격을, 즉 1945년 8월 1일 기준 가격 대비 10~30배 인상된 가격을 채택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가격의 채택을 거부하였습니다.

- a) 북쪽 지역으로 공급되는 상품들의 경우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았으며, 그것들의 시장가격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미국인들은 그것들의 가격을 남쪽 지역의 가격에 근접시키기 위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자고 제안하였다.
- b) 1945년 12월 1일 기준 가격은 조선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교란시키는 불안정하고 우연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경제의 건전화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며, 조선 인민 기본대중의 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의견교환이 있는 후에 미국인들은 1945년 8월 1일 현재 가격을 상품교환 계산의 기준가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조선의 남쪽지역에서 북쪽지역으로의 식량공급과 관련하여 애초에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월 22~24일 서울의 미군정청에서 남조선 각도지사회의가 개최되어 식량상황 문제가 특별하게 거론되었습니다. 1월 24일 저녁에 경제분과위원회 미국인 대표 언더우드 대령은 “남조선에 쌀이 없고, 쌀은 공급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미군사령부는 조선 남쪽에 대한 쌀 보장 청사진이 작성되는 4월 초순에야 쌀 배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얼마간 이른 4월 1일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1946년 1월 25일 협의회 총회에서 아놀드 장군이 언더우드의 이 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1946년 2월 4일자 상품교환 문제에 대한 경제분과위원회 회의들에서, 협의회 총회들에서, 그리고 미국 대표단 발언에서 쌀 보장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북조선 거주 주민 9,767,218명 - 37.7%

남조선 거주 주민 16,132,924명 - 62.3%

1940~1944년 평균 식량수확량은 1인당 다음과 같았다.

북조선	쌀	0.68홉
	여타 상품	1.02홉
	총계	1.7홉
남조선	쌀	0.91홉
	여타 상품	0.78홉
	총계	1.69홉

따라서 1인당 생산량은 양 지역이 동일하였다.

같은 시기에 만주로부터 조선으로 농작물 1,782,000홉이 반입되었고, 일본으로 쌀 6,428,650홉이 반출되었다. 반출이 반입에 비해 매우 많았지만, 이는 조선에 식량이 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 주민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강탈로 인한 것이었다.

조선 남쪽의 식량상황이 다음과 같이 곤란해지고 있다.

- a) 1945년 수확이 평균 이하였다.
- b) 남쪽 지방에서는 12월 31일까지 일본인들이 경영했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상당한 양의 쌀을 징발해서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 c)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으로 인해 증가한 남조선 인구가 250만 명이다.
- d) 만주로부터의 양곡 반입이 중단되었다.

식량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a) 군정청은 주민들이 잉여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쌀을 적발해내서 강제로 몰수하고 있다.
- b) 소비표준화를 도입하고, 쌀의 밀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유엔구제부흥기구(UNRRA)에 함께 지원을 요청하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말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남조선은 남쪽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북조선의 공업 종사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데 필수적이며, 남쪽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잉여식량의 북조선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식량공급 문제의 제기는 다음과 같은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1) 북쪽에 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성하고 소련군사령부의 제 시책 시행을 곤란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 북쪽에 대한 쌀 공급을 원하지 않는다.
- 2) 조선 남쪽지역에 보다 유리한 식량상황을 조성한다.
- 3) 조선임시정부를 조직하는데 있어 미군사령부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미국인들은 공급량과 관련하여 1945년 8월 1일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산정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때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었습니다.

경제분과위원회에서 미국인들과 합의된 북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으로의 공급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액수
비료	4천만 엔
석탄	2천4십만 엔
소금	1백만 엔
목재	1백만 엔
전기	1천9백5십만 엔
여타 상품	7백6십만 엔
총액	8천9백5십만 엔

처음에 미국인들은 5,287,700엔 상당의 상품목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경공업 제품이 2,636,250엔, 전력공업 상품이 784,200엔, 임업장비가 1,867,250엔 등이었습니다. 경제분과위원회 사업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이 목록을 수차례 확장시켰고, 총공급가액을 1천만 엔까지 설정하면서 기관차 부속품의 공급을 추가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식량, 궤도, 자동차 등의 공급을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급품목에 적은 양의 부속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북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으로의 공급가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공급가액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 1) 북조선에서 공급하는 품목의 총공급가액 중 2/3을 차지하며 남쪽 지역 경제에 매우 필요한 석탄과 비료는 철도가 수송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인들은 석탄을 전면적으로 거부했고, 비료는 38,500톤으로 감축시켰습니다.

- 2) 총액 5,590,000엔 상당의 운송결정에 따라 남쪽 철도에서 북쪽 철도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는 객차 100대와 특별객차 1대를 공급총액에 포함시켰습니다.

정상가의 10배가 넘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가격인 총액 5,875,000엔으로 기관차 수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 3) 1945년 8월 15일부터 1946년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전기료를 여러 가지 간계를 사용하여 2천만 엔이 아닌 총 5,301,277엔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4) 미국인들은 1946년 2월 4일자 신청서를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1945년 12월 1일 현재 가격을 적용한 공급가액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표에 따르면, 조선 남쪽에서 공급하는 총액은 212,352,898엔으로, 북쪽에서 공급하는 총액은 104,343,523엔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차이는 미국인들이 북쪽 지역 상품의 가격을 단지 5배만 인상시키고, 더욱이 전기 가격의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서 남쪽 지역 상품의 가격을 10배 인상시키는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전기료 지불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의 우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a) 상품공급을 통해 1945년 채무액 및 1946년 가격을 지불한다.
- b) 전기회사들의 계약에 따라 1945년 8월 1일 현재 가격인 1kw/h당 2.97전으로 전기가격을 책정한다.

미국인들은 지불조건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 대표들로 구성된 지배인들의 통합관리소의 지도하에 모든 전기공업을 통합시키자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제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이 요구를 철회한 대신, 전기배분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기술위원회를 만들자는 새로운 요구를 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조선의 북쪽과 남쪽 간 공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자 전기료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 1) 1945년 4월 1일자 가격에 따라 1kw/h당 2전 지불
- 2) 남쪽 지역에서 공급받은 전기료로 지불해야 하는 액수에서 서울에 있는 전기회사 직원들의 임금, 조선 남쪽에 있는 전기망의 사용 및 수리비용을 공제한다.
- 3) 붉은 군대가 조선에 진입하던 당시 38도선 이북에 있었던 서울의 전기회사 자본을 계산에 포함시킨다.

우리는 미국인들의 이러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위의 2개 안건과 관련하여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 대표자들이 제기한 요구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고, 이 안건들은 의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3. 교통 문제 논의

미국인들은 처음에는 조선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간의 철도교통, 자동차교통, 우마차교통 및 해운을 서울에 있는 기존 운영기관들의 지도하에 모든 교통체계를 통합하는 것과 연계시켰습니다(미국인들이 제안한 의제의 1조 2항 참조).

논의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 대표들로 구성되며 철도교통을 통제 및 운영하는 임무를 지닌 교통기술위원회를 조직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의 채택에 대한 우리의 거부가 있던 후 미국인들은 모든 교통문제의 조정을 보장하고 교통문제에 대해 양측 사령관에게 제기할 제안을 준비하는 임무를 가지는 기술통합교통위원회를 조직하자는 소련군사령부 대표들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남조선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선로, 자동차 및 기관차 수리에 필요한 일부 부족한 부품들(열관, 연관 등)을 절대로 공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기관차들을 수리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함께 유엔구제부흥기구와 맥아더 장군을 만나서 조선의 북쪽 지역뿐 아니라 남쪽 지역의 기관차 수리를 위한 부품을 다른 곳으로부터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북쪽 철도 기관차의 근본적 수리 및 중급 수리의 보장 의무를 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철도교통에 대해 결정한다는 9조는 수리소를 재건하고 1945년 8월 1일 생산수준과 1945년 8월 1일까지 존재했던 공급원칙에 따라 부품을 생산하는데 대한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의 상호의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퇴각하면서 일본인들이 끌고 갔던 기관차와 화차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했으며, 객차 100량만을 인도하는데 동의했지만, 상품유통 문제를 논의하면서 객차 1량 당 52,400엔의 가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상품유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문제 결정의 실질적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4. 일본 난민들의 송환 및 조선인들의 이주 문제 논의

아놀드 장군은 북조선에서 일본 난민들을 송환하는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했지만, 후에 소련대표단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협의회 논의에서 배제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미국인들은 난민들을 보장하기 위한 쌀의 공급을 거부하였다.

b) 미국인들은 일본에서 북조선의 거주지까지 귀환하는 조선인들의 급양 보장을 거부하였다.

c)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아놀드는 의무들이 맥아더 장군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군사령부의 의무들을 결정문에 기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협의회 사업 말미에 아놀드 장군은 부산항에서 매일 4,000명, 원산항에서 매일 600명을 운송한다는 계산 하에 선박을 제공하는 의무를 미군사령부가 부담하겠지만, 미군 지역에서의 철도를 통한 운송은 북조선의 자금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악선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조선인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문제를 논의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채택된 결정에 해당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기 거주지로 귀환하는 조선인 난민들

② 대학생, 초중고등 학생들

③ 상업이나 가족상황에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조선인들

미국인들은 동 조항을 채택하자고 특별히 주장했는데, 그들은 이 조항의 채택을 협의회에서 나머지 모든 사안들을 결정하는데 연계시켰습니다.

5. 우편전신 연결과 라디오 문제의 논의

미국인들은 첫 번째 안을 통해 서울의 관련 기관들의 지도하에 일본이 항복하기 전과 같이 통신을 조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신 연결을 조직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제안들을 검토하는데 동의하면서, 전신 연결의 조직과 단일 라디오방송망 체계의 수립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라디오방송망과 관련하여 우리는 라디오방송국들 간의 전파 배분 한 가지 사안만을 논의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우편 연결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에 막대한 양의 서신이 쌓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적 서신(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 조정 문제들의 논의

미국인들은 모든 행정경제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연락집단들의 광범위한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조선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련군사령부 대표들은 이 문제의 논의를 거부했고, 붉은 군대 총참모장의 지시에 따라 미국인들의 요구에 부가하여 사령부들 간의 조정 문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연락장교집단들(각 2~3명)을 교환하는 것으로 조정 문제를 결정하였습니다.

7. 특별 사안

a) 미국인들은 의제를 논의하는 중에, 그리고 협의회를 마칠 때까지 만주에서 북조선 지역을 경유해서 남조선으로 석탄과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4조와 부합하지 않으며 동 협의회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b) 미국인들은 38도선의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변경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남조선에 전기를 보장하는 수력발전소들과 회소금속(우라늄) 광산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놀드 장군은 경계선 수정 요구의 근거를 대면서 행정활동의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정부의 승인을 받고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제안의 논의를 거부했고, 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검토 주제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IV. 협의회 결과

1. 1946년 1월 7일자 붉은 군대 총참모장 지시 No.146084/III에서 지적한 4개 사안 가운데 3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양 지역 간의 철도운송 1개 사안만이 해결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상품유통 및 전기 공급 조건 등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일반적 협의회들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사업 초기에 이 문제들의 해결을 지연시켰습니다.

1월 25일부터 미국인들의 행동에서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식량공급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절대적으로 거부했고, 2월 1일부터는 이 문제들의 논의를 결렬시키기 위해 1946년 2월 4일에 발표한 성명서에 언급된 내용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 지역 간 철도교통 재개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지역으로부터 북조선 철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상품유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운송의 재개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인적 이동 결정과 관련된 승객운송에 있어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2.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자기들에게 중차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도모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행정 분야 :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38도선을 해체한다. 북쪽 지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자유로운 침투를 위한 기반으로서의 자유로운 상업을 허용한다.
- 경제 분야 : 조선의 경제를 통합하여 서울에 있는 미군정청 해당 부서나 각 부문별 통합미분과위원회들에 귀속시킨다. 이는 미국 자본의 북조선 공업, 운수 부분 침투 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다.

3. 협의회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들만을 해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a) 양 지역 간 철도, 차량 및 우마차 운송에 대하여. 북조선과 남조선 항구들 간의 연안 항행에 대하여.
- b) 소련 측 군사책임지역과 미국 측 군사책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소련과 미국 쌍방의 초소들을 건립하는데 대하여.
- c)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조선인의 이동 규칙에 대하여.
- d) 양 지역 간 서신 교환을 위한 우편연락의 재개에 대하여.
- e) 라디오방송국들 간의 전파 배분에 대하여.
- f) 조선 북쪽 지역의 소련군사령부와 조선 남쪽 지역의 미군사령부 간 행정-경제 문제의 향후 조정방안 수립에 대하여.

그 외에 협의회에서는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2조 3항에 따라 남조선의 미군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의 소련군사령부 대표들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귀하가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제출합니다.

V. 협의회와 관련한 남조선의 정치상황

모스크바삼상회의 이후 미국 정권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선의 여론을 유도하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조선의 모든 정치경제 부문을 서울에 귀속시킨다는 자기들의 입장이 조선 사회의 지지를 받고, 그럼으로써 소미협의회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이 공개된 순간부터 조선의 여론은 2개의 대립적 진영(신탁통치 찬성과 반대)으로 급격하게 분열되었습니다.

이 두 진영의 정치투쟁은 일련의 시위와 집회, 언론의 지면을 통한 발언 등에 반영되었습니다. 언론은 소미협의회를 환영했고, 38도선을 따라 그어진 경계선을 즉각 해체(이 사안은 미국 측의 사주 없이는 진행되지 않았다)하고 조선에 완벽한 독립을 부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우익 언론은 연합군의 철군을 단호하게 제안했으며, 명백하게 반소적인 논조의 글을 내보냈습니다. 공산당과 인민당 기관지만이 유일하게 상황을 올바르게 평가하였습니다. 이 신문은 조선인민들에게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결정의 실행에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언론을 통한 영향력 행사 외에도 일련의 시위를 조직하는 방법을 통해 소련대표단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요컨대 1월 18일 소련대표단이 회의장으로 갈 때 미군정청 건물 앞에서 독립촉성중앙부인단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신탁통치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시위자들 중 일부(중고등학생 600명)는 “조선인민보” 편집부와 인민당사를 습격했고, 그곳에서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1월 18일 1천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신탁통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시위자들은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소련 총영사관 지역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총영사에게 자신들의 탄원서를 전달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 그들은 “조선민보” 편집국과 시인민위원회 건물을 습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월 28일 공산당의 주도로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를 환영하고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군중집회가 거행되었습니다. 집회에는 인근의 농촌에서 온 약 3천명의 농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반동분자들이 집회를 좌절시키고자 했음에도 집회는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협의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의 신문들에는 신탁통치 반대와 38선 철폐를 표명하는 일련의 논설과 만평이 게재되었습니다. 신문들은 이번 협의회가 38선 철폐, 조선에서 연합군의 철군, 조선의 임시인민정부 수립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다양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타스통신이 제공한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 결정 채택 관련 상보가 조선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조선 인민들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승만과 김구 같은 우익분자와 반동분자들이 잘못된 설명을 하려하고 타스통신이 제공한 소식을 비하하려 했음에도, 이 소식은 조선 인민들이 진정한 상황에 눈을 뜨게 만들었으며, 조선 여론의 상당부분을 미국인들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검증된 무기와 악선전과 선동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신문과 조선 인민대중으로부터 자기들의 권위가 대폭 훼손되었습니다.

첨부 :

- 1) 미국 측이 제안한 의제들
- 2) 협의회에서 채택한 의제들
- 3) 협의회에서 채택한 결정들
- 4) 미국대표단의 성명들
- 5) 소련군사령부 대표의 성명들

총 _____ 매

소련군사령부 대표단장
상장 슈티코프(Штыков) [서명]

1946년 2월 17일

[첨부분건 #1]

남조선 주둔 미군참모부
조선, 서울

조선 주둔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의 협의회 의제

제1부

이 협의회는 “남조선 및 북조선과 관계가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행정-경제 분야에서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부와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 간의 상시적인 조정을 수립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 주둔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 대표들의 협의회를 2주일 간 소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모스크바회의 결정의 조선에 대한 성명 4조 3항을 이행하기 위해 소집된다.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 간 행정-경제 분야 활동의 상시적 조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전 조선 통합 원칙의 적용이 이 협의회 목적이다. 이러한 활동은 모스크바 성명에 언급된 조선을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2부

단일 행정-경제 단위로서의 북조선과 남조선을 조정하기 위해 이하에 적시하는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1. 북조선과 남조선의 철도망을 서울에 위치한 중앙기관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단일교통업무 체계로 복구한다.
2. 서울에 위치한 송전소의 통제 아래 필요한 전기를 조선 전역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보장한다.
3. 전화 및 전신을 서울에 위치한 중앙기구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단일운영체제로 복구한다.
4. 만주에서 남조선으로 (역청을 함유한) 타르석탄과 농산물의 운송을 허용한다.
5.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미국과 소련의 군사책임지역 간 분계선을 조정한다.
38도선 이남의 황해도 지역을 소련군사령부에 이양한다.
38조선 이북의 경기도 지역을 미군사령부에 이양한다.
강원도 지역은 행정적 지역경계와 이 경계의 하부단위 지역경계에 따라 다시 조정한다.
6. 38도선을 따라 전개되어 있는 모든 군사요새들을 제거한다.
7. 미국과 소련 군사책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미소 상호관제소들을 건설한다.
8. 통제소들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자들의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 관할 지역들 간 통행을 허용한다.
 - a) 1. 상시거주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자
 2. 상업에 종사하는 자
 3. 공무로 오가는 자
 4. 특별 출장으로 가는 자

5. 특별협정에 예정된 업무로 가는 자
 - b) 산업원료 및 생활필수품의 운반
 - c) 모든 유형의 운송수단
9. 재정운용의 지도, 국내출자 외국환의 제한 및 환율, 송금 및 상업차관, 상품 교환 등의 방법에 대한 단일 재정정책을 수립한다. 조선은행권을 전국의 표준통화로 사용하고, 그 밖의 모든 통화의 사용을 중지한다.
10. 북조선과 남조선 항구들 사이의 상품 이동에 대한 단일규칙을 제정한다.
11. 상업과 공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생산재와 소비재의 정상적인 거래를 재개한다.
12. 상업기관 사무소와 북조선 및 남조선 내 동 기관 지부들 간의 정상적인 연락을 허용한다.
13. 양 지역에서 통용되는 우표들을 이용한 우편업무를 재개한다.
14. 난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계획을 준비한다.
15. 조선 전역을 관할하는 중앙라디오방송망을 재개한다.
16. 신문 [판독불가] 교환을 확산시킨다.
17. 조선으로부터의 기간상품(기계, 설비, 발전소) 압수(반출)를 금한다.
18. 조선 전역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연락집단들을 교환한다.
19. 이해당사국(소련 혹은 미국) 대표들에게 조선에 위치한 해당국가나 해당국 시민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허용한다.
20. 전술한 조항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결정을 하도록 위원회 분과들의 회동을 조직한다.

제3부

북조선과 남조선 간의 자유왕래를 방해하는 모든 [판독불가]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제거하고, 단일의 행정경제 단위로서의 조선에 대한 정상적인 통치를 확립한다.

[첨부분건 #2]

기밀

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 대표자들의 협의회 의제

1.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의 전력공급 조건에 대하여
2. 북조선과 남조선 간 식량(쌀), 원료, 연료, 공업설비, 화학제품 등의 교환에 대하여
3. 양 지역 간 철도 및 화물차량 운수에 대하여, 그리고 북조선과 남조선 항구들 간 연안 항행에 대하여
4. 북조선과 남조선 항구들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데 대하여
5. a)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 그리고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의 공급에 대한 상호지불에 대하여
5. b) 전 조선을 위한 단일재정체계의 수립에 대하여(이 조항은 향후 검토항목에 포함되었음)
6.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 난민들을 송환하는 것에 대하여
7. 소련과 미국의 군사책임지역 분계선을 따라 소련과 미국의 상호관제소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8. 조선 시민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규칙에 대하여
9. 양 지역 간 개봉우편물과 소포를 제외한 우편물 교환을 위한 우편연락의 재개에 대하여
10. 조선의 북부 지역을 통해 만주에서 남조선으로 석탄과 식량을 운송하는 것에 대하여 (이 조항은 유예되었음)
11. 조선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 간 전화 및 전신 설치에 대하여 (이 조항은 검토 과정에 포함되었음)
12. 상업기관 사무소들 간의 정상적인 연락을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이 조항은 검토 과정에 포함되었음)
13. 북조선과 남조선의 라디오방송국들 사이의 광범위한 방송을 위한 주파수와 전파의 배분에 대하여
14. 38도선을 따라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의 2개 지역 간 분계선을 부분적이고 지역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소련군사령부 대표들은 이러한 미군사령부의 제안을 최고위 소련군사령부에 보고하고, 최고위 사령부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후 이 조항의 의제 포함 여부 논의를 재개해야 합니다.
15.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관과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관 간 향후 조정을 위한 대책의 마련에 대하여 (행정-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소련대표단장

상장 슈티코프

미국대표단장

소장 아놀드

[첨부문건 #3]

조선 서울

1946년 2월 5일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부와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 대표들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정

1.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는 소련 외무상, 미국 외무장관, 영국 외무장관의 모스크바회의 결정 조선 편 3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a) 위원회 위원의 수는 소련 측 5명, 미국 측 5명 등 총 10명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 수는 양측 사령관의 상호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 b) 필요한 수의 고문, 전문가, 기술일꾼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킨다.
 - c) 조선의 수도인 서울을 공동위원회의 상설사업장소로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평양으로 갈 것이다. 위원회는 남조선과 북조선의 민주적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협의에 필요한 경우 조선의 다른 지점들로 갈 수 있다.
 - d) 공동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 대표들의 협의회 사업이 종료되고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자기의 사업을 개시한다.
 - e)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는 위원회 위원들을 각각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 f) 위원회의 사업절차는 동 위원회의 최초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소련대표단장
상장 슈티코프

미국대표단장
소장 아놀드

[첨부분건 #3]

기밀

1946년 2월 1일

제3항. “양 지역 간 철도 및 화물차량 운수에 대하여, 그리고 북조선과 남조선 항구들 간 연안 항행에 대하여”

결정 :

1. 조선의 소련과 미국 군사책임지역 간에 철도, 자동차, 해상(연안) 운송을 재개한다.
2. 운송 사무에 대한 책임과 통제는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소련 측 군사책임지역 - 소련군사령부, 미국 측 군사책임지역 - 미군사령부.
3. 군사책임지역들 간의 운송 재개는 교역 및 주민 이동에 대한 협정의 틀에서 화물과 인력의 수송을 보장해야 한다.
4. 미군사령부는 소련 측 군사책임지역에서 미국 측 군사책임지역으로의 화물 운송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운송장비(직통화물열차와 선박)를 공급하도록 가능한 모든 실무적인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5.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동차량을 파악하고 이의 적시적인 귀환을 보장하기 위해 편리한 정거장들에 교환소를 조직한다.
6. 양 지역 간 운송과 관련한 운송봉사에 대한 모든 대가는 봉사판매소들에서 차후의 상호계산에 의거하여 상호 합의된 요금표에 따라 지불한다.
7. 양 지역 간 선박의 이동은 사전에 조정되며, 양 지역 군사령부들이 승인한 해상운송계획들에 의거하여야 한다.
8. 화물차량의 이동은 양 지역 사령관들 간의 특별협정에 따라 설치된 관제소들이 있는 간선도로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9. 기본수리(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와 일반수리(средний ремонт)를 실시하고 수리를 위한 예비부품들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는 각각 자기의 지역에서 원산, 서울, 부산, 인천, 평양의 기관차수리공장들을 1947년 4월 1일 이전까지 1945년 8월 1일 현재의 용량을 100% 가동하도록 하는 모든 가능한 대책을 시행하고, 다음을 재개한다.
 - a) 1945년 8월 1일 현재의 비율에 따라 조선의 철도를 수리한다.
 - b)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는 조선의 양 지역 철도기관차들의 수리를 위한 필요한 수량의 예비부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1945년 8월 1일 현재의 비율에 따라 양 지역 수리공장들에 분배하는 목표를 가진다.
10. 양 사령부에 의해 동 협정이 승인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부는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에 철도객차 100량을 인도한다.
11. 철도, 해상(연안) 및 차량수송과 관련한 모든 사안들의 조정을 보장하고, 양 지역 간 이동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양측 사령관에게 보

내는 제안들을 준비하기 위한 단일의 기술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양측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1차례 이상, 양측 중 한 측의 제안으로 개최된다. 회의는 서울이나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양 지역 군사령부의 비준을 받은 후 양 지역에서 발효된다.

소련대표단장

미국대표단장

상장 슈티코프

소장 아놀드

[첨부분건 #4]

기밀

1946년 2월 1일

제7항. “소련과 미국의 군사책임지역 분계선을 따라 소련과 미국의 상호관제소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결정 :

1.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조선 시민과 상품이 이동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관제소들을 설치해야 한다.
2.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는 자기의 군사책임지역 영역에 관제소들을 설치한다.
미국 측과 소련 측 관제소는 가능한 한 근접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관제소 간 거리가 2km를 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관제소들 간의 연락은 전화와 연락병을 통해 유지될 것이다.
3. 관제소들의 배치와 사업규정은 양 지역 간 경계선의 변동 문제가 확정된 후 양측 사령부 간의 특별협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소련대표단장
상장 슈티코프

미국대표단장
소장 아놀드

[첨부분건 #5]

기밀

1946년 2월 1일

제8항. “조선 시민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규칙에 대하여”

결정 :

1. a)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조선 시민들이 이전의 거주지로 귀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동의한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조선 시민은 발표(통보)가 있는 후 60일 이내에 지방정권기관에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b) 조선 시민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는 양 지역의 수송 가능성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자들의 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된 작업진행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조선 시민들에게는 철도를 통한 이동과 함께 여타의 모든 운송수단을 이용한 이주가 허용될 것이다.
- c) 조선 시민들이 조선의 남쪽 지역에서 북쪽 지역,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의 영구거주지로 이주할 경우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는 이주자의 수에 해당하는 기존의 규정량에 맞추어 1946년 8월 1일까지의 식량을 상대측에게 각각 제공해야 한다. 각 지역의 사령부는 제공되는 식량을 이주자의 비율에 따라 각 도에 분배해야 한다. 매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조선 주민의 수적 차이를 보장하는 양만큼 식량의 납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 교역이나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조선인들과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허용한다. 이러한 이동은 조선인이나 상품의 이동이 예정된 지역 사령부의 사람이나 상품의 이동에 대한 동의가 있는 조건에서 사람이나 상품이 위치하는 지역 주재 사령부가 발행하는 특별통행권을 통해 허용될 수 있다.
3. 군사책임지역 분계선 구역의 대학, 중급 및 특수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긴급한 가족 혹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여행할 수밖에 없는 조선인들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상호 허용한다.
그와 같은 여행은 각각의 경우에 대한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의 상호합의에 따라 허용된다.

소련대표단장	미국대표단장
상장 슈티코프	소장 아놀드

[첨부분건 #6]

기밀

1946년 2월 1일

제9항. “양 지역 간 개봉우편물과 소포를 제외한 우편물 교환을 위한 우편연락의 재개에 대하여”

결정 :

1. 양 지역 우편기관들이 우편서신(1급 - 봉함서신과 엽서)과 등기우편물을 교환하도록 허용한다.
2. 양측은 각각 우편물 교환 시 서한의 수량과 종류가 적시된 통지서를 제출한다. 양측은 교환되는 우편물을 각 도별로 분류해야 한다.
3. 조선에 단일 우표를 도입할 때까지 각 측은 우편물을 교환할 때 다른 지역의 기존 우표와 통용이 가능한 여타의 다른 요금지불수단을 통해 우편료가 실제로 지불된 것으로 인정한다.
4. 우편물 교환은 개성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5. 군사령부 대표와 무장경비를 하는 우편기관 대표가 양측 각각의 교환 장소까지 각 우편물을 운반해 온다.
6. 가능한 한 조속하게 우편물의 최초 교환을 실시하고, 이후의 교환은 필요성 및 해당 우편기관들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다.
7. 상호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련대표단장
상장 슈티코프

미국대표단장
소장 아놀드

[첨부문건 #7]

기밀

1946년 2월 1일

제13항. “북조선과 남조선의 라디오방송국들 사이의 광범위한 방송을 위한 주파수와 전파의 배분에 대하여”

결정 :

1.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는 조선의 라디오방송국들이 사용하는 전파를 첨부와 같이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조선에서의 라디오방송을 조정할 목적으로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 대표들은 만약 사령부들 중 일방이 자기 지역 라디오방송국의 확정된 파장이나 출력의 변경을 원한다면 사령부는 개별 사안별로 각각 이 변경에 대해 타 사령부와 교섭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소련대표단장
상장 슈티코프

미국대표단장
소장 아놀드

소련 군사책임지역의 라디오방송국

장소	주파수 킬로헤르츠(kHz)	출력 와트(w)
청진	1100	300
청진	850	10000
성진	1000	50
성진	1000	50
함흥	1050	250
함흥	780	250
고원	860	80
원산	660	50
원산	660	50
신의주	900	50
평양	1000	500
평양	820	500
진남포	530	350
진남포	580	350
해주	800	50

미국 군사책임지역의 라디오방송국

장소	주파수 킬로헤르츠(kHz)	출력 와트(w)
서울	970	50000
서울	2510	3000
청주	600	50
대전	880	50
이리	570	5000
광주	780	3000
부산	650	3000
대구	800	8000
마산	600	50
영암(Ионгам)	600	30
강릉	650	30

[첨부분건 #8]

기밀

1946년 2월 2일

제15항.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관과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관 간 향후 조정을 위한 대책의 마련에 대하여”

결정 :

1. 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 간에 행정-경제 문제에 대한 상시적인 조정을 시행하기 위해 향후 필요한 경우 양측 중 한 측의 요청에 따라 양측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다루는 양측(소련 및 미국) 사령부 대표들의 특별협의회를 개최한다.
2. 각 측 군사령부에서 논의를 제안하는 사안에 따라 특별협의회에 적합한 대표들과 필요한 수의 고문 및 전문가들을 임명한다.
3. 특별협회의 결정은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관과 남조선 주둔 미군사령관이 승인한 후에 발효된다.
4. 특별협의회 개최 장소 및 시간은 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서울이나 평양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5. 평양 주재 소련군참모부와 서울 주재 미군참모부의 지속적인 연락을 위해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는 평양-서울 전화선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매일 09시부터 12시까지와 13시부터 17시까지 실무 장교를 배치하기로 합의한다.
6.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를 조정하는데 있어 사령관들을 보조하도록 양 사령부는 2~3명의 연락집단을 교환한다.

소련대표단장

상장 슈티코프

미국대표단장

소장 아놀드